제 1 차 문학진흥포럼

▸ 일 시 : 2016년 4월 8일(금) 14:00~17:00

▸ 장 소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예술위원회

CONTENTS

<1부>

• 발제 1 한국문학진흥 정책방향 ····· 1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발제 2 균형과 소통 – 2016 문학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 13
– 김종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2부>

• 토론 1 곽효환 ····· 23
– 대산문화재단 상무

• 토론 2 김경식 ····· 29
–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 토론 3 김재순 ····· 35
–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 토론 4 박상순 ····· 39
–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 토론 5 안상학 ····· 45
–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토론 6 이광섭 ····· 51
– 문학의집 서울 사무국장

• 토론 7 표중식 ····· 57
–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제 1 차 문학진흥포럼

일 시 : 2016년 4월 8일(금) 14:00~17:00

장 소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진행순서

시 간			구분	비고
14:00~14:10		10'	개 회 인사말	•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부	14:10~14:40	30'	발제1	• 한국문학진흥 정책방향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4:40~15:10	30'	발제2	• 균형과 소통 – 2016 문학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 **김종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15:10~15:30	20'	휴식	
2부	15:30~16:30	60'	종합토론	〈토론〉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장/좌장) •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 **김경식**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사무총장) • **김재순**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 **박상순**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이광섭** (문학의집 서울 사무국장) • **표중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16:30~16:50	20'	질의응답	
16:50~			폐 회	•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지역순회포럼(권역별 4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예정

발제 1

한국문학진흥 정책방향

김 정 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한국문학진흥 정책방향

2016. 4. 8.(금)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1 추진배경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4 2016년 중점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1. 추진배경

문학진흥법 제정 (공포 2016. 2월, 시행 2016. 8월)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문학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법 제6조)

문학진흥 자문기구로서의〈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법 제7조)

문학단체 육성, 학술활동 지원, 국제교류, 인력양성(법 제12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법 제18조)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의 육성(법 제19조, 제20조), 등록(법 제21조)

※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2016. 2월~8월), 별도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

1. 추진배경

문학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의 미흡

단기적이고 '직접지원' 위주의 지원사업에 편중된 실정

→ 생태계(창작-유통-향유)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비전 필요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대두

효과성이 불투명한 단순 직접지원 방식을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체계화

문학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병행
- 유관 분야와의 융복합 사업 발굴 등 연계 체제 구축

관련 기관 및 단체간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1. 추진배경

※ 문학 관련 주관 부서/관련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지역단위 기관
예술정책관실 문화기반정책관실 미디어정책관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학관 등

2. 정책목표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문학창작과 향유의 진흥, 한국문학의 세계화

추진전략

① 창작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유통 → 향유)

② 문체부 — 문학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 협업체계 구축 — 공공기관 /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2. 정책목표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1 창작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 문학창작공간에 대한 다각적 지원
- 문단 외 활동을 통한 두터운 창작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2 유통 출판 번역의 선진화

- 우수문학도서 출판, 유통 활성화
- 문학진흥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
- 한국문학의 세계화

3 문학 향유 확산

- 책의 향기가 가득한 사회만들기 (일상속 독서문화 정착)
- 문학독자체험프로그램 확대

4 인프라 및 제도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지역문학관 건립 및 운영활성화
- 문학자료 DB구축
- 문학관련 연구 강화
- 문학정책자문위 구성

정책협력체제 구축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지자체, 지역문학관, 문학 외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① 창작역량강화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청소년 문학영재 발굴(장르별 청소년 문학 유망주발굴 지원)

차세대 신진작가 육성(기초활동, 발표공간, 작품집, 해외레지던시 등)

유망작가 지원(문단추천제 등을 통해 유망작가 창작활동 지원)

예술원 회원 창작활동 지원(특별강연회, 예술창작활동 등)

문학인 대상 창작준비금 제도 운영 확대

문학창작공간에 대한 다각적 지원

문학창작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레지던시, 문학관 등)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다각화

사이버 문학광장 운영 활성화(온라인 문학집필, 토론 등)

문화체육관광부

① 창작역량강화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문단 외 활동을 통한 두터운 창작안전망 구축(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 문학인과 기업의 만남(스토리 있는 기업운영, 제품기획 등)
- 문학인과 지역주민간 소통(길위의 인문학, 문화예술 명예교사)
- 문학과 공연예술/대중문화/콘텐츠산업/관광사업과의 융복합







문화체육관광부

② 유통 · 출판 · 번역의 선진화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우수문학도서 출판, 유통 활성화

- 문학 관련 도서 공공구매 및 출판지원(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 출판콘텐츠)
- 도서정가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추진

문학진흥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

- 문화가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 확대,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이용하는 서비스 구축
-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확대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지원 지속 확대

한국문학의 세계화

- 한국문학 번역, 출판지원 확대, 전문 번역가 양성
- 한국문학의 정보화(전자도서관, 뉴미디어 등)
- 한국문학 국제교류행사 활성화(세계문학제, 한글작가대회 등)
- ※ 세계적 수준의 한국문학축제(문학제) 개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③ 문학 향유 확산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책의 향기가 가득한 사회만들기(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

방송,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독서 캠페인 기획 추진

전국 초중고, 직장, 사회 곳곳에서 독서열기 조성

-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제, 홍보활동 등)
-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 병영독서문화 독서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성화

유관부처 연계 '청소년 방과후 독서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확충

좋은 책 선정, 이야기 할머니, 도서관열차 등 책의 향기가 가득한 사회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③ 문학 향유 확산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문학 독자 체험프로그램 확대

독자와 문학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 조성

- 북투어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작은 도서관, 문예단체 문예활동지원

* 기간문학단체가 발간하는 협회지를 매개로 독자개발 및 문학활성화

〈문학주간〉 행사를 통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 문학주간행사(10월, 대학로 및 각 지역): 마로니에 백일장, 창작지원 성과작품 전시, 문학나무 만들기, 문학 UCC 발표회, 자료집 발간 등

〈문학열차〉 추진(작가-독자가 연계한 문학탐방단 1박2일 프로그램)

문학인과 독자가 함께하는 〈문학포럼〉 활성화(독자와의 만남)

문화체육관광부

4 인프라 및 제도 —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2016~2019)

사업기간	2016~2019
총사업비	450억원 내외(부지 별도)
후보지	상징성, 대표성, 연계성 및 협력성, 경제성, 접근성, 기능성, 확장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예정
기능	자료수집, 자료보존, 자료이용, 연구활동, 전시, 교육 및 교류 기능을 갖춘 종합거점으로서의 역할
면적	대지면적 최소 15,000m2 이상, 건축연면적 최소 10,000m2 이상

! 일부 지자체의 불필요한 과열경쟁 등에 대한 자제 필요(협조요청)

문화체육관광부

4 인프라 및 제도 — 3.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지역문학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기존 문학관들의 연계 체제 강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확충 지원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문학 관련 자료 DB 구축 및 연구활동 강화

근대문학 DB 등 문학관련 자료 확보, 문예지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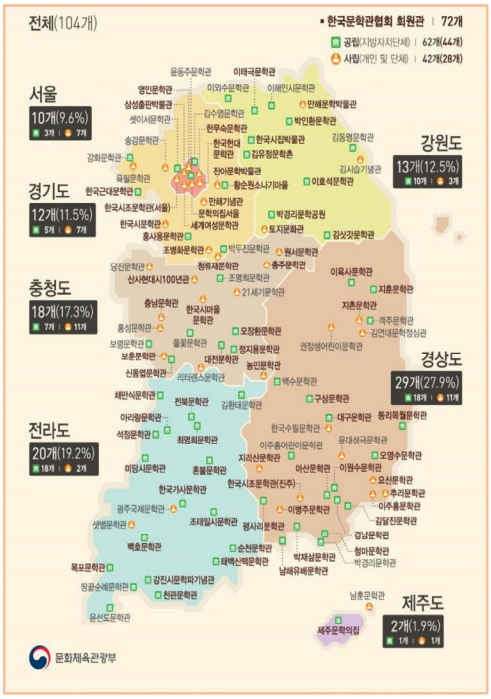
문학창작환경 실태조사, 문학진흥을 위한 기초연구활동 등 강화

문학분야 정책 Community 구성, 운영

문학진흥포럼 운영(정례화), 문학진흥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자료 1 지역문학관 현황



지역	전체	공립	사립
서울	10	3	7
경기	12	5	7
강원	13	10	3
충청	18	7	11
경상	29	18	11
전라	20	18	2
제주	2	1	1
계	104	62	42

참고자료 2 2016년도 문학진흥 및 관련분야 예산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문학지원)

사업 내용		15년	16년	증감
예술위원회	문학창작지원, 문학단체 및 집필공간 지원, 문학대중화 사업 등	3,450	2,750	△700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내용		15년	16년	증감
지역 문학관 건립 (예술정책관실)	기형도 문학관 건립(경기 광명시)	0	1,000	1,000
	고은 시인 생가복원사업(전북 군산시)	0	200	200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전북 익산시)	0	766	766
	노계 가사문학관 건립(경북 예천군)	300	380	80
소계		300	2,346	2,046

참고자료 2 2016년도 문학진흥 및 관련분야 예산 현황

일반회계

사업 내용		15년	16년	증감
예술정책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문학 분야 예술인복지, 세계 한글작가 대회 개최 등	1,913	3,394	1,481
문화기반정책관	병영 독서 활성화, 국민독서 문화 증진	5,551	5,907	356
콘텐츠정책관	스토리창작 및 창작소재 발굴, 원작소설 창작과정, 스토리 공모대전, K-story 해외진출 지원 등 스토리 다각화사업	3,850	4,480	630
미디어정책관	세종도서 선정, 국내외 작가초청(서울국제도서전), 한국도서 해외전파 등	5,815	5,755	△60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번역 지원, 교육사업, 한국고전의 현대화 및 세계화, 해외교류활동 등	5,315	6,545	1,230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	900	700	△200
대한민국예술원	예술특별 강연회, 창작활동 및 낭독회	88	88	0
소계		23,432	26,869	3,437

발제 2

균형과 소통

2016 문학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김 종 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균형과 소통

2016 문학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김종회(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경희대 교수)

1. 문학진흥의 의의와 정책의 효용성

올해 초 2월 3일 '문학진흥법'이 공포되고 8월 4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문학진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와 범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진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 학회, 문학인 등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어서 "영화, 만화, 음악, 공예 등 다른 장르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학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 및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상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법률로 이를 규정하는 노력이 성사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이 과연 '진흥'을 통해 본질적이고 고급한 성과의 추수와 자발적이고 탄력 있는 수용의 확산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없지 않다. 문학이 인간 정신의 가장 고양된 수준을 반영하며 그것은 고적(孤寂)한 창작실에서 자신과의 치열한 대결을 통해 산출되는 독자적인 생산이라는, 전통적이고 고색창연한 인식이 아직도 만만찮은 세력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학진흥이 자칫 양적 증대에 치우치고 질적 평준화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인 셈이다. 하지만 '일학(一鶴)'이 '군계(群鷄)' 가운데서 배출될 뿐 아니라, 그 폭넓은 군계의 집단에 문학적 지원을 공여하는 일 자체가 문화복리의 실행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 그 실제적 집행을 맡아야 할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올해 문체부와 예술위 등 유관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문학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로 국민행복 추구"라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합당한 목표다. 문화향유의 고양 없이 진정한 선진사회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에서다. 그 세부 추진 과제로는 창작역량 강화, 문학작품 유통·출판·번역 활성화, 문학 향유 기회 확대, 문학 관련 인프라 확충 등 4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문면 그대로 실천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쉽사리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의 즉자성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영역에 걸쳐져 있는 문학과 문화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당연히 안고수비(眼高手卑)의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이 오늘의 이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올해 문학진흥기본계획을 보면, 추진전략으로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 활동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설계가 있다. 말하자면 **정책의 공급자인 국가 기관에서 진행할 것과 수요자인 국민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촉발되어야 할 것**을 동시에 유념한 전략이다. 이 양자의 균형이 바로 작동하고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양할 수 있을 때, 문학진흥이라는 익숙하고도 낯선 개념이 우리 문화의 토양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 이외에도 지금은 유실된 과거의 순기능을 회복하거나 과거에 미비하였으므로 지금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균형의 모본(模本)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작자와 독자 사이의 균형**이다. 수준 있는 문화의 진작을 위해 창작자를, 그리고 그것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독자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창작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집합체인 문학단체 사이의 균형**이다. 창작 주체인 개인의 지위와 그것을 활성화하는 바탕으로서 문학단체의 지위를 함께 수납하여 효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나 더 있다. **미학적 가치에 있어 비교 우위 또는 수월성(秀越性)을 가진 문학과 포괄적인 범주에 있어 기초 지원이 필요한 문학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우월한 예술성을 가진 문학을 지원하는 것은, 두 개의 장벽을 넘는 작품의 발굴을 도모한다. 하나는 시대의 장벽을 넘어 계대(繼代)의 감응을 불러오는 '고전'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언어와 지경(地境)의 장벽을 넘어 세계문학의 중심부로 향하게 하는 '세계화'의 길이다. 포괄적 범주의 기초 지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추어 문학진흥을 일상 생활 속에서 구현한다. 의무교육이나 평생학습의 차원으로 복리의 마당을 확장하는 한편, 최소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경우처럼 문학 아사자가 출현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진흥 정책의 다면적인 균형은, 그것이 가진 상징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국민 정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문학진흥의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미리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그 균형이 서로 상반된 양자의 입장을 중간에서 물리적으로 반분한다는 뜻이 아니다. 양 방향을 향한 청각을 동시에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의견 청취와 민활하고 설득력 있는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동양문화권의 중용이 단순히 중간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인 양방의 통합을 발전적으로 주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문학진흥을 위한 개선 및 추진 방안

지금까지 문학진흥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문예당국의 실행이 없어서 다시금 이 문제가 논의의 탁상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숱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문학계는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양자 사이의 심정적 거리가 먼 것은 결국 상호 소통의 문제**다. 지원 받는 예산의 다과(多寡)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가 문제다. 또한 이는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수혜를 받는 현장의 문학인 사이에 신뢰의 형성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기실 이 경우처럼 수혜자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지원 분야도 드물 것이다. 문학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자존심에 대한 배려를 수반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문예진흥기금 문학분야 최근 3개년 예산 현황**(현황표 첨부)**을 보면, 문학창작기금(무기명 작품집 공모)는 예산이 축소되다가 소멸되고 대신 유망작가 지원과 청소년 문학영재 발굴육성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런가 하면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이 소멸된 대신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이 신설되었다. 문학창작집 집필 공간 지원은 축소되고, 문학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문학순회 사업이 추가되었다. 합계에 있어 2016년 예산은 앞의 두 해에 비해 2억 원이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어든 사정의 내막을 알 수 없으나, 그 규모의 문제에 앞서서 증액을 못할망정 감액에 이른 사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선별, 청소년으로의 확대, 문학단체에 대한 고려, 문학진흥의 저변 확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장의 문학인들은 이와 같은 **지원 형식의 대강(大綱)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그 절차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동안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에 있어, 심

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었던 것이 그 한 예다. 물론 여기에는 문학계 여론조성 그룹의 자가발전, 진영논리 대변자의 자기옹호 등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은 앞으로도 절대적 엄정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 사업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정당성의 확보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중심 장르와 방계 장르의 구분, 장르문학에 대한 기준 적용, 창작 및 수용 영역이 다른 아동문학과 번역문학에 대한 평가 등도 운용의 설득력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불만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학인 1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오늘에 있어 대다수의 요망을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대공약수의 수렴을 도모하는 노력은 그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과 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파급효과 또한 다를 것이다.

앞으로 4개월 후면 시행될 문학진흥법은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립·공립·사립 문학관에 대한 규정을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문학진흥법으로 이관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문학진흥을 경제논리로 보는 시각만큼 근시안적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1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보고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있지만, **문학진흥 사업은 그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 점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장기계획에 의거해 있어야 마땅**하다. 그와 동시에 목전의 화급지사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기에 누가 담당하더라도 지난한 일일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를 우선 순위에서 배제해야 하는 방침은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도 꼭 같이 해당된다.

한국의 전역에, 지자체 마다에 산재한 공립·사립 문학관들은 현재 그 숫자가 71개에 이른다. 할 수만 있다면 각 지역의 문학관들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몇 개의 문학관을 제외하고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문학관이 그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고급한 정신적 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열악하기 비할 데 없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들의 보수와 대우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배양과 확충도 이 조건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그런데 과연 문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문학관 문제를 실제의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립문학관은 지난 2월 문학진흥법의 공포를 전후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문학진흥법의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가 국립문학관인 만큼 명칭과 규모, 컨텐츠의 구성과 건립의 실행 등이 곧바로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다. 한국의 국립문학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었고, 압박과 강점의 근대사와 그 동통(疼痛)

을 담은 문학의 보존 및 자료화를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다. 다른 나라들의 국립문학관 건립 연도를 보면 러시아국립문학관이 1934년, 일본근대문학관이 1967년, 중국현대문학관이 1985년, 국립타이완문학관이 2003년, 독일현대문학관이 2006년이다. 늦은 만큼 잘 지어야 한다. 이제 법률이 제정되고 또 예산도 마련된 만큼, 그 **건립의 과정과 방향 또한 역사적 기록의 보존은 물론 문학진흥에 명실상부하게 값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학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국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국립문학관이 역사관이요 박물관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반성적 성찰의 기능을 동반한다. 동시에 국립문학관은 그 **과거의 바탕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일구어내는 발전적 전망을 견인**해야 한다. 이 미래 지향의 기능은 과거 보존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 남북한 문학의 교류와 양자 간 문화통합의 방안을 예비하는 데, 국립문학관이 굳건한 보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동포문학, 곧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의 연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원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문학관에는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북한문학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공간을 거친 다음 한국문학과 결별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행로를 걸어간 이 두 문학의 실체(fact)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가치 기준도 다르며, 이를 공통분모로 묶어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립문학관이 단순히 보존과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문학의 추동력을 촉발해야할 지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은 그 접근과 성과의 생산이 훨씬 수월하고, 그 구도가 북한문학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중화제가 될 수도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이 삼자가 상호 조응하는 문학관 건립이, 범국민적 문학진흥의 순기능을 강화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문화강국을 향한 꿈과 남은 문제들

이제 다시 '문학진흥'의 원론으로 돌아갈 차례다.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편만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행복하며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충일하면, 또 그로 인해 문화적 생산성이 향상되어 간다면 그 자리가 '문화강국'의 자리다. 일찍이 영국이 세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화강국에의 인식을

언표(言表)한 레토릭이다. 이번의 문학진흥법 공포와 시행을 계기로 문학인은 물론 문예정책 당국도 모두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환의 계기가 결코 흔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수용자인 독자의 의식이 공급자인 작가의 수준에 육박하고 보편적 문화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서, 독자의 시각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문학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대중적 수용이 이를 뒷받침 하도록 울타리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예진흥기금 운용 방안 가운데 사이버문학광장 운영이나 문학활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계층 문학순회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체육에 있어 생활체육의 비중이 급격히 성장한 것처럼, 문학에 있어서도 **생활문학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고급한 문학, 예술성이 수발(秀拔)한 문학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편의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문학의 소용도 있는 것이다. 마치 이는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등급이 다르지만, 각기의 용처(用處)가 따로 있음과 마찬가지다. 고급한 문학은 그것대로 별도의 관리에 맡겨야 한다.

문학진흥을 추진하고 특히 **지원 예산을 집행할 때, 이를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뒷말이 따라다닐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지원 대상자 선정을 공모제로 하고, 진행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하되 그 민간까지 선량한 담당자가 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을 **현장에 있는 문학인, 그리고 문학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 결정적인 일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지금까지 상존하는 불통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년 전 필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한인문학회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 연극 대본을 인수해 오자는 제의를 했었으나,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전례도 있다.

지원 예산의 배정이라는 매우 민감한 과제를 **인적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느 인사가 관할 부처 장관이 되었을 때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문학인들이 많다.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에 문학인들의 실상을 대변할 위원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있다. 지난해 개정된 문학단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강화가 시대적 흐름과 역주행이라는 불만도 팽배해 있다. 이러한 여론은 문학진흥의 효용성을 추수하는데 만만찮은 장애물들이다. 문예정책 당국은 이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적극적 성의와 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마치 돈으로 안락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편안한 잠을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동시대적 공시적 단계를 넘어 더 멀리 가야할 길이 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에서 노래한 것처럼, 가야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약속은 이 시대의 문학인과 문학 관계자 모두가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꿈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것, 이 시대에 온전히 구비해 두어야 할 문학적 책임에 연동되어 있다. 이 문학진흥의 과제, 문학진흥법의 적용이 **개인적이거나 기관·정권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민족적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책임**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국민운동 또는 남북관계가 민족적 차원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됨으로써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문학진흥의 지원이 먼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이 **올곧은 평가와 사후관리**에 관한 일이다. 대체로 국고지원이 지원은 어렵고 그 이후는 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평가는 냉정해야 하고 그것이 다음의 지원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때의 '냉정'은 냉정하기 위한 냉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온정'을 위한 냉정이어야 한다. 그렇게 잘 계획되고 또 화해롭게 매설된 문학진흥 시스템은, 그것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소망을 따라 빈센트 반 고흐를, 허만 멜빌을, 에밀리 브론테를 돕거나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일익을 감당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주 희소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하는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균형과 소통의 '선량'한 마음**으로, 멀지만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할 길이다.

문예진흥기금 문학분야 최근 3개년 예산 현황

2016. 4. 3(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작가 개인 지원	문학창작기금 (무기명작품집공모)	1,000	문학창작기금 (무기명작품집공모)	700	–	–
	–	–	주목할 만한 작가지원	300	유망작가 지원	300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50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5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_ 문학	300
	–	–	–	–	청소년문학영재발굴육성	100
문학단체, 문예지 지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문학행사및연구지원	200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300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000	우수문예지발간지원	300	–	–
	–	–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키이빙	700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키이빙	200
창작집필 공간지원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500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500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250
온라인매체 운영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문학활성화 사업추진	–	–	–	–	문학활성화프로그램운영	800
	–	–	–	–	소외계층문학순회사업	500
합계		3,450		3,450		3,250

토론 1

곽 효 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1 ▸▸

‘2016 문학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

곽효환(시인, 대산문화재단 상무)

문학진흥법이 지난 2월 공포된데 이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장에 참여하는 심경은 양가적이다. 하나는 김종회 선생의 발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다른 예술장르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의 진흥 또는 발전을 위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학진흥법 제정과 시행은 늦었지만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모든 예술문화의 핵심이고 원천 콘텐츠 역할을 해온 문학이 법률에 미래를 의탁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학이 한 집단의 삶과 정신의 결정체이자 문화의 지형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예술문화 전반에 강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시공을 초월해서 통용되고 보전되어 왔고 또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문학의 ‘선순환적 생태계’조성을 위한 준비와 토론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토론자의 토론문은 김종회 선생의 발제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정훈 예술정책과장의 〈2016년 문학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또는 의견을 제시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중장기적, 단계적 정책 수립

문학정책 뿐만 아니라 그간의 예술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발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중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계획이 미흡하거나 부재했다는데 있다. 어쩌면 문학진흥법 제정 역시 이러한데서 제정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발표한 ‘2016 문학진흥 기본계획’은 많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중복되거나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정리되어야 하고 또 민간과의 협력 또는 민간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사업들 역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중요도, 우선순위, 시급성을 기준으로 단기, 중

기, 장기계획으로 정리되고 수립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당장의 현안부터 장기의 과제들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시기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학진흥 정책의 핵심은 문학과 문학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에는 문학인 및 주요 문학단체, 문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 및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지를 모으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 제시된 정책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보면 주체가 되어야 할 문학인과 문학단체,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문학지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해온 민간단체의 참여와 이를 통한 연계체제 구축방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김종회 선생의 발제문에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중심,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 있는 문학인, 문학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 또는 민간중심형이면서 관이 협력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당위이자 과거의 경험에 비롯된 불신을 걷어내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인, 문학단체, 민간지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학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정책 수립과 집행뿐만 아니라 '문학정책위원회' 구성, 운영까지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에 대한 제언

문학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문학인을 위한 지원, 문학을 둘러싼 환경과 출판유통 환경 지원, 문학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이 효과적이고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과 내용적인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문학인들의 창작역량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장 앞

에 세운 것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방안은 아직 성글고 초보적이다.

특히 문학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신진작가들과 중심역할을 할 중견 및 중진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문학인들이 생활인으로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느낌의 지원방식은 예술의 존엄성 차원에서 볼 때 성공하기 어렵다. 문학인과 국민 그리고 국가가 모두 일정하게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 토론자가 수차례 제안한 바 있는) 문학인들이 참여하는 국공립 도서관 상주작가, 초중등학교 글쓰기 및 문예지도교사 제도 등은 문학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제공하고 공공차원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보상하며 국민들은 독자로서 혹은 글쓰기에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민간영역과 협력 및 시너지효과

발표문에 나와 있는 문학지원 정책 가운데 이미 민간 영역에서 상당부분 활성화 되고 있거나 상당부분 자리 잡은 사업들이 여럿 눈에 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민간영역과 협력하거나 또는 민간영역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 시키거나 체계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차원이나 문학인, 문학단체들이 이미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베끼듯이 중복해서 시행하거나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학도서 출판, 유통활성화'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향유기회 확대'등도 마찬가지이다.

발표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미 축소되거나 폐지한 사업(문학관련 도서 공공구매, 우수 문예지 지원 등)이 있거나 민간차원에서 한창 시행 또는 추진 중이거나 이미 뿌리를 내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시인협회의 '시의 날'을 '시의 달'로 확장, 예술위원회와 대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서울국제문학포럼'과 '동아시아문학포럼') 등이 우선 눈에 띈다. 정책이 신뢰를 가지려면 참여자 및 관계자와의 합의와 동의, 정책의 일관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업들과의 중복, 충돌을 피하는 노력과 옥석을 구분하며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4. 국립문학관 건립과 운영

문학진흥법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립문학관 건립과 운영일 것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 볼 때 한참이나 늦은 문학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국민적 기대감이 큰 만큼 문학진흥에 있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문학관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 우리 문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자 문학과 문학인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담론과 창작의 산실이 됨으로써 문학과 문학인을 위하면서도 예술문화와 국민을 위한 우리 정신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립과정, 용도, 운영방향 등 전반에 걸쳐서는 별도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토론 2

김 경 식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사무총장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2 ▸▸

김경식(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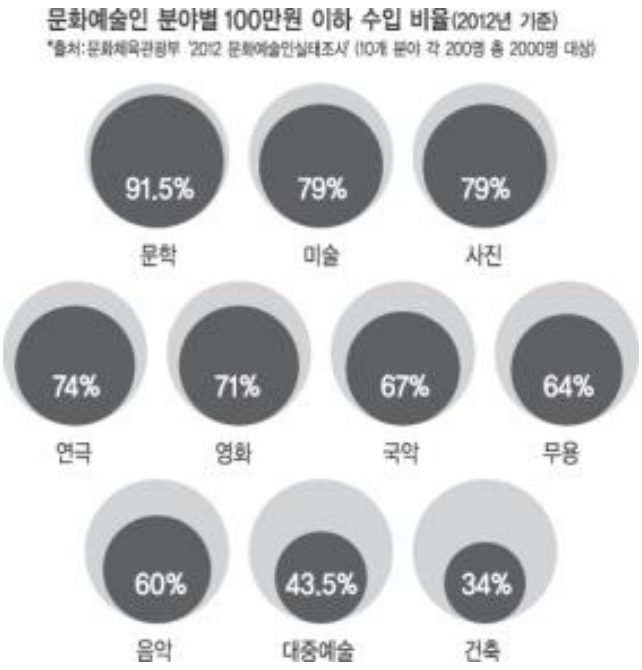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문학진흥법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되었고,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문학진흥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문학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4장 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는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먼저 김종회 교수의 "문학진흥 사업은 그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장기계획에 의거해 있어야 마땅하다. 경제 논리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하는 방침은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도 꼭 같이 해당된다."는 발제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간 경제논리에 의해서 문학의 토양은 황폐화되었다. 먼저 작가들의 삶은 파탄직전이다. 과거에는 선비적인 대접이 동반되었지만 작금에는 모든 경제논리에 의해 작가들은 자긍심조차 잃어버렸다. 물론 이것은 작가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양한 문학진흥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작가들에게 낙수효과가 없다면 문학진흥법의 시행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2013년 한국작가회의 소속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307명 중에서 73.9%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다. 이 중에서 50만원 이하가 42.0%, 50만~100만원이 31.9%였다. 이런 소득 금액은 응답자 대부분 50대로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4인 기준 월 163만원에도 미달했다.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문학 분야의 문인들이 매우 열악한 재정 상태임을 다음의 도표로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수입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0개 분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3년 2월 발표했던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0만 원 이하 문화예술인비율은 문학(91.5%), 미술(79%), 사진(79%), 연극(74%), 영화(71%), 국악(67%), 무용(64%), 음악(60%), 대중예술(43.5%), 건축(34%) 순이다.

문학은 비타민과 같은 존재로 국민들의 삶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할을 효용을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장르가 급성장하는 것에 비해 정체 현상을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산하기금 운용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술 장르가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예술창조역량은 추상적이고 실적을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어렵다.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문학진흥기본 계획(안)의 발제문에서 문학의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에 관해서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과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활동 증진"임을 밝혔다. 문학진흥 사업을 통한 활성화가 문학창작자들에게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실천 정책을 기대하는 이유다.

문학진흥법에는 문학관건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4장 전부를 차지할 정도다. 필자는 문학진흥법 국회 통과 직전 증인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국립문학관 건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국립문학관 건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김종회 교수의 발

제 내용에 공감한다.

“국립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학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국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국립문학관이 역사관이요 박물관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반성적 성찰의 기능을 동반한다. 동시에 국립문학관은 그 과거의 바탕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일구어내는 발전적 전망을 견인해야 한다.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북한문학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공간을 거친 다음 한국문학과 결별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행로를 걸어간 이 두 문학의 실체(fact)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가치 기준도 다르며, 이를 공통분모로 묶어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립문학관이 단순히 보존과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문학의 추동력을 촉발해야할 지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은 그 접근과 성과의 생산이 훨씬 수월하고, 그 구도가 북한문학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중화제가 될 수도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16~2019)과 설립취지는 “한국문학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관리, 전시, 교육, 연구, 교류 등의 기능을 종합적인 거점 마련”이다.

2016년 4월 7일 현재, 4.13총선을 앞두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전이 치열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까지 5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국립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소문을 타고 번지기 때문이다. 13개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유치경쟁은 정치논리에 의해 국립문학관의 위치가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문학 교류의 장과 함께 한국이 자랑하는 문학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국내문학의 주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선정은 필수다. 객관적인 방법에 위한 타당성 조사와 건립 후에 외국의 관광객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선정과 서정적인 문학 환경이 건립지로 우선되어야 한다. 공모를 통한 심사과정과 위치선정에서 정치인들의 정치논리를 극도로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토론 3

김 재 순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3 ▸▸

문학 향유 기획 확대

김재순(소설가)

초중고교내 문학동아리를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 지원 및 독서결과 공유 등 독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 추진

1. 방과 후 어린이 돌봄 교실에 독서활동가 파견 및 독서지도 지원에 대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돌봄교실은 방과 후 집이 비어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돌봄교사는 계약직인데 통상 하루 여섯 시간 일하고 월급 백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주 2회는 독서활동가가 가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글짓기와 독후감 발표하기, 동시와 그림을 함께 스케치북에 표현하기 등등

자라나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문학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조선족 보모 밑에서 키워진 아이들의 특징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부자연스럽고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영어학원에 다녀서 영어로 말하는 것은 곧잘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말을 어색하게 하는 부끄러운 결과가 종종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국어를 잘 합니다. 국어야말로 다른 과목을 잘하는 기초가 되지요

문인들의 생활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열악합니다. 학교로 파견 나가서 어린이 문학교육을 도울 수 있게 되면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발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되고 글짓기와 고전읽기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면 자신도 모르게 상식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교실이 확

대되어 돌봄 교실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교육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길을 만들고 문인들에게는 자라나는 나라의 주인공들에게 인문학 기초를 잡아준다는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2. 책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인성함양기의 유아대상 고전 문학구연 프로그램 운영

이야기 할머니

현대 사회에 진입하면서 조손세대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다운 이웃의 할머니도 좋겠지만 오십세 이상 되신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길 제안합니다.

효, 사랑, 지혜, 정직의 주제를 담고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교육방식을 체계화하는데 어르신 문인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시를 비롯하여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를 훑어보니 소설부문은 전멸입니다.

일본 문인의 에세이 “미움 받지 않을 용기”와 혜민 스님의 에세이가 1, 2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기 싫고 쉬고 싶을 때 저도 에세이를 찾아서 읽습니다.

3년은 걸려야 창작집 한권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만 서점에 내놔봐야 나흘쯤 선을 보이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외갓집의 외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야기 할머니의 자격은 만56세(1960년생)에서 만70세(1946년생)까지 고정 직업이 없는 여성으로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췄다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이 문인인 사람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리를 넓혀 주면 어떨까요? 재능기부로라도 떨어진 문인의 자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4

박 상 순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4 ▸▸

전체의 본질을 향한 주체적, 예술적 행위의 필요성

박상순(시인)

문학 진흥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논의하게 되어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토론자 본인은 문학 창작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출판사의 대표를 지내며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출판했고, 문학계간지 발행의 책임을 맡았던 문학출판인으로, 또 세계적인 해외 출판사의 국내 제휴회사의 대표를 지낸 국외의 출판산업 관련자로, 해외 여러 나라와의 번역저작권 업무 및 각국의 문학출판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한 경험, 그리고 한국시인협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문학단체 관련자로, 아울러 한국문학번역원 주최의 제1회 서울작가축제를 기획했고 현재 이 축제의 기획위원을 경험한 일 등에서 얻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문학 사업에 관한 주체적, 예술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창작역량 강화의 한 방식으로 계획한 〈청소년 문학 영재 발굴〉의 경우, 백일장이나 공모전을 통한 시상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발굴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상 제도에 머물고 만다면, 현재 여러 단체와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역량에 관한 개념 정의와 강화에 관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시행하다가 중지한 〈문학창작기금〉 제도와 다름이 없다. 해외의 유명 출판사와 문학기획사들이 어떻게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영국의 문학기획사와 출판사에서는 2~3개월간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당대의 문제 작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마케팅 전략 담당자들의 강의까지도 포함하는 창작 교실인 동시에 문학 시장의 변화 추이 및 국내외 수용자를 분석하고, 사회적 성공의 현실적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결론적으로 창작의 기본 테크닉은 물론이고, 문학과 시대정신과의 관계에서부터 문화 경제적 접근법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역량은 무엇이며 강화의 방법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관적이다. 누가 이와

같은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학인의 활동 영역 강화와 지역 소통의 문제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하는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문학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교 교육에서 국어가 주요 과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체육 과목의 수업 시간이 과거에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국어 시간을 앞지른다. 여기에는 무용(현대적, 대중적인 춤)이나 기타 스포츠 교육으로, 외부 초빙 강사의 특별 시간까지 더해져 풍요롭다. 여기에 비하면 국어 과목, 특히 문학작품의 위치는 초라하다. 국어과의 특별활동이란 겨우 도서관 활동이나 독서라는 과거형 접근법만이 숨 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정규 교육 활동에 문학지원 제도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진 작가의 지원은 더 확대해야 한다. 유망 작가와 신진 작가를 선정하는 것 등에도 균형만을 중시한다면 양적 지원에 그칠 것이 틀림없다.

문학은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가운데 성장한다. 변혁하고 배반하면서 갈등을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적 인간의 행위인 까닭이다. 문학단체와의 연계는 전문성을 통한 균형과 확대를 모색하는 방식이지만, 일차적으로 문학 단체는 가입 회원의 권익 신장을 토대로 구성된다. 단체에 소속된 각각 문학인의 활동이나 권익의 신장이 한국 문학 전체의 사회적 활동증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특성은 부분의 총화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게슈탈트 이론의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학 단체 지원이나 연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학 단체의 합이 한국문학의 개념 전체가 아니라는 질적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단체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학 단체들을 고루 참여시켜 이루어진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 사업처럼, 시행 기관에서는 균형이나 공정성을 표방할 수는 있어도 질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향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이버 문학 광장〉 등의 인터넷 공간 관련 사업은 균형을 갖춘, 창작 활동에 고루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문학 본연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성이 부족한 공간이다. 기획이나 편집의 주요 방향을 첨예하게 구성하기 보다는, 폭넓고 무난하게 구성한 상차림과 같다. 때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대와 정신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진정한 매체이다. 소통을, 발화자와 수신자간의 기호 전달 및 이해 체계로만 본다면, 그것은 기계론적 접근 방식에 그칠 수 있다.

세종도서 또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은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지루한 도서관을 벗어나 축제 등의 생동감이 더해져야 한다. 서점은 계속 사라진다. 그런데 지원 없이도

문학의 자비 출판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형식 소멸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표현과 공유 방식에 보완적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에 기여하는 문학적 매체의 개발, 향유의 즐거움에 관한 문학의 공유방식 개발, 일반적인 좋은 것보다는 특정한 것을 주목하는 기능을 더해 과거형인 출판이나 도서관, 서점을 보완해야 한다. 책읽기 단체나 도서관의 피동적 무대보다는 더 현대적인 연출 기법이 결합된 무대와 참여형 무대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공공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그 실행 방식을 예술적으로 고안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자문역을 넘어서는 전문 위원회의 설치는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라는 태생적 토대로 인해 문학의 맵거나 신맛 같은, 특정한 농도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 보편성, 공익성의 관점으로는 예술로서의 문학도 산업으로서의 문학도 비관적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라도, 순환적인 예술적 편파성이 필요하다. (나머지 안건에 관해서 토론 현장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5

안 상 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5 ▸▸

〈국립한국문학관〉과 「문학진흥법」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안상학(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한 10여 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지인의 집 별채에 도서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는 것을 봤다. 어림잡아 2천권은 족히 되어 보였다. 어떤 국문학 전공 노교수가 퇴임하면서 연구실에 있던 책을 몽땅 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주로 문학 서적이었다. 지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문학 서적에서부터 최근에 나온 문학서적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당연히 궁금증이 일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거긴 박영종(목월)의 동시집 초판본을 비롯한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노천명의 『별을 쳐다보며』 등 희귀본들이 많이 있었다. 문예지인 《현대문학》, 《문화예술》 등도 창간호부터 고스란히 꽂혀 있었다. 주로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발행된 책이 많았다. 그 교수가 1950학번인 것을 감안하면 주로 대학시절에 보던 책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관 상태는 엉망이었다. 권수에 비해서 서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아무렇게나 쌓아 놓았다. 그대로 둔다면 오래지 않아 좀이 먹거나 습해를 입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 지인에게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가지고 싶다고 했다. 허락을 받고 근 2백 권 정도 챙겼다. 그것을 지금도 갖고 있다.

2007년이었을 것이다. 신경림 시인과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나는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사전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챙겼다. 신경림 시인의 첫시집 『農舞』(1975) 초판본과 노교수의 서가에서 찾은 신경림 시인의 등단작이 실린 《문화예술》(1955)를 가져갔다. 이 책들은 화면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담을 마치고 《문화예술》은 신경림 시인에게 기증했다. 물론 신 시인은 갖고 있지도 않았고, 등단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남의 책으로 생색을 낸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까이 지내는 이 아무개 시인은 고서를 수집하는 취미를 지녔다. 특히 근대에 발행한 시집, 그 중에서도 초판본만 모으는 편집광적인 습벽은 발군이다. 내가 소장하고 있던 박목월이 본명으로 발간한 『박영종 동시집』(1946)은 지금 이 시인의 서가

에 있다. 나보다는 아무래도 거기가 어울릴 것 같아서 넘겨준 것이다. 이 시인이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 시집이 많은 것으로 안다.

노교수가 버린 서가에서 확보한 책과 내가 소장하고 있던 근대문학자료 중 볼만한 것들로 적당량 골라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 2007년 전주에서 열렸던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의 한 부스에서였다.

●도종환 의원이 어떤(미발표) 대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학진흥법」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학진흥법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시인)에 의하면 2013년부터 '문학진흥법'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국립근대문학관'을 짓기 위한 공청회를 했고, 관계 부처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먼저 실태 파악부터 해라. 근대문학 유산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종류 몇 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지 총량을 담을 수 있는 규모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였다고 한다. 여기에 따른 1차 결과물이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보고서』(국립중앙도서관, 2014)다. 갑오경장(1894)부터 해방(1945)년까지 발행된 문학책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고 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여기에 더해 산재해 있는 문학 유산을 정리, 보관, 전시하며 교육과 연구 자료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진흥에 관한 여러 문제까지 포용한 양상이다. 문학 단체 육성, 학술활동, 문학교육,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국립한국문학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공·사립 문학관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국립문학관을 지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문학 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확보한 법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립답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위탁 운영 시스템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문학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반길 일이나 운영 면에서는 온전한 국가지원 방식이 아닌 여타 재원에도 기대는 방식이라면 영구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와 운영 주체의 관계 문제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시대와 불화하며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비판적인 특성을 지녔다. 자칫 양자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 도종환 의원도 밝힌 이야기지만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문학 전문 인력으로 된 법인의 주체적인 운영을 예산 삭감 등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학진흥법이 문학인들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지원금이나 일자리, 연구 용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라져가는 문학의 자취를 보유하고 유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당대에 좋은 문학인들이 좋은 문학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당대에 생산된 문학과 문학인에 관한 자료를 후대에 가서도 아끼고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유지 보존하게끔 해야 한다. 〈국립근대문학관〉에서 〈국립한국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까닭이 단지 근대와 근대 이전의 고전문학까지 담아내는 그릇으로써가 아니라 당대에 생성된 문학을 후대에 아우를 수 있는 그릇으로까지 확대할 때 이름값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확장성과 신장성을 담는 명실상부한 〈국립한국문학관〉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박물적 가치에 현실적인 생산성도 담보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물론 문학은 개인적 창조물이지만 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 창작지원금, 우수 문예지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는 〈문학과 세계〉. 〈시안〉, 〈시평〉 등 좋은 문예지가 폐간을 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개인 창작자들도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다. 때로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장기적으로는 자생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도 부정하긴 어렵다.

우수한 문학적 예술 인력이 장르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문학이 1순위였다. 그러나 지금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갔다. 중고등학교 문예반이 전멸하다시피 했다. 문학동아리 활동도 거의 사라진 게 현실이다. 대학도 문창과나 국문학과가 사라지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타 장르를 내세우며 겨우 문학의 끈을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내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흥의 몫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로 나온 책들을 보관하고 읽히고 하는 것은 도서관의 몫이다. 미처 수용하지 못한 근대문학자료를 발굴하고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은 〈국립한국문학관〉의 몫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문학의 전성기는 1980년대다. 당대를 주도하던 구성원들을 보면 고은, 백낙청, 신경림 등 1930년대 생들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단절된 아픔을 겪었던 근대문학을 읽은 세대다. 이들의 문학 속에는 근대가 이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도 이들의 위상이 건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상살이에 60년 주기가 있다고 본다. 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세대의 60년 뒤는 1990년대 세대다. 어려서 구제금융을 겪은 이들이다. 지금 이십대 전후 세대들이다. 2040년대에 다시 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최근 백석의 첫 시집이자 초판본인 『사슴』을 비롯한 근대문학서적들의 복각본 출간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재미난 현상이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문학진흥법」이 출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토론 6

이 광 섭

문학의집 서울 사무국장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6 ▸▸

문학 '진흥'에 대한 기대와 제안

- '문학관'을 중심으로

이광섭(문학의집서울 사무국장)

1.

문학인, 문학단체, 그리고 문학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 제정은 그저 반가울 따름입니다. 지금 막 시작된 논의 과정을 거쳐 밑그림을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시행령과 그에 따른 계획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수혜자인 청소년·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에 충실한 계획과 결과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문학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문학진흥법' 제정의 세부 내용 중 '문학관'과 '국립문학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 설립된 한국문학관협회에는 현재 72개의 전국의 문학관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는 문학관 수를 포함하면 80여개 관 이상입니다. 2000년 이전의 개관한 문학관은 11여개 문학관이며 2000년 이후 많은 문학관이 건립되어 2000년~2009년에 설립한 문학관은 40여개 관이고 2010년 이후 설립·개관한 문학관 21개 관입니다. 2000년 이전 건립된 문학관은 개인이나 유족이 설립한 사립문학관이었으나 그 후에는 건립한 문학관은 지자체 등에 의해 설립된 공립문학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현재 한국문학관협회 회원 문학관은 72개관이며 이 중 47개 문학관은 지자체 설립의 공립문학관입니다. 이는 지역 문학 단체의 요구와 지자체의 문화적인 사업의 공약과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등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문학관의 양적 증가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비약적인 양적인 발전이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문학관 역사가 짧고 우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인 면과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상 운영 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립문학관의 운영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해 지역 문학단체에 위

탁 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운영이 열악한 지자체 예산 지출을 다소 줄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증가를 통한 자료 수집 연구 사업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학관 건립을 위해 외형적인 규모에 대한 고민만 할 뿐 문학적 사료 연구와 콘텐츠 개발 연구 번역 사업, 자료 수집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관람객의 증가는커녕 1일 10여명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제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학(문학관) 건립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문학관은 무료 개방되고 있으며, 일부 공립문학관의 입장료 수입도 온전히 지자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문학관에 전액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학관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몇 %씩을 감축하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문학관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문학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체 구성은 연구진과 현장 실무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해 주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 공립문학관 건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선'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민들이 이해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지원하되 공립문학관 건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금의 방침처럼 생존 작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문학관 건립은 지양되어야 합니다.(단, 지역 문인과 출향 문인 다수를 위한 문학관(예를 들어 경남문학관, 전라북도문학관 등)은 제외) 또한 사립문학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경을 통해 일부 건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뜻있는 유족과 단체(개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기존 설립된 문학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소재지 지자체에만 재정적 지원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학진흥법에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관 지원과 그리고 문학관 협의체(한국문학관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국 문학관에 대한 사업·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가 설립되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DB구축을 위한 초기 사업으로 전국 문학관의 소장·전시 자료에 대한 목록 정리 작업이었으나 재

정과 전문 인력의 문제로 인해 소극적인 아카이브 작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색 등을 통한 자료 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문학관이나 협회에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관 위상 제고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전문 학예사 배치와 관리직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문학관 건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집단과 해당 학예사를 적극 참여케 하여 전문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학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문학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문학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여건이 절실하며, 또한 표준화된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하여 공유하고 문학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쟁하고 발전하는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문학진흥법'에는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형태의 설립에 대해 시기와 장소만 문제일 뿐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문학작품의 대중화를 위한 공연·전시관의 기능과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기능을 함께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의 복합공간으로 건립되며 문학인을 육성하는 창작 공간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 기능과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부재하여 전시·소장 자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희귀자료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학관에 소장·전시하고 있는 훼손, 망실 등 우려가 되는 자료에 대한 복원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문학관의 소장·전시 자료에 대한 확대된 DB 구축도 국립한국문학관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립(國立)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규모와 재정적 뒷받침, 인프란 육성에 대한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30년 동안 홋카이도의 흩어진 문학 자료를 집대성한 홋카이도립문학관, 120만 점의 근대 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쿄근대문학관처럼 체계적인 보존과 문학전문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고, 문학 연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 위주에서 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공간 육성을 통한 명실상부한 국립한

국문학관이어야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단순한 자료 전시와 소장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 문학에 대한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학관 발전과 문학번역원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문학관 소장 작품(김유정문학촌, 노작홍사용문학관, 만해한용운, 황순원문학촌, 이육사문학관, 신동엽문학관, 박경리문학공원 등 작고 문인을 기리는 문학관)에 대한 번역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종회 교수께서도 언급하였듯이 최대공약수의 수렴을 도모하려는 열정과 노력으로 우수문학도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한 창작 역량 강화와 신진작가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4.

앞서 문학관 건립과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김종회 교수님의 발제에도 언급되었듯이 문학관이 그 지역의 문학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고급한 정신적 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열악하기 비할 데 없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들의 보수와 대우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고, 저 또한 문학관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가 필요성이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학예사 시험과목에 문학사 추가 및 문학관 근무 경력 인정에 따른 학예사 응시기회 부여하는 학예사시험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학관 의무적 학예사 채용에 대한 의견과 채용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진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문학 ‘진흥’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전문적인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정부정책방향’이 수립되어하며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문학(문학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100년을 보는 토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7

표 중 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제1차 문학진흥포럼을 위한 토론문 7 ▸▸

(사)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표중식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지원책을 벗어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문학 향유 기회 확대
  - 문학독서문화 조성

    스마트폰 시대에 어떻게 독서문화를 조성할지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학독자체험프로그램 확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자에게 적절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 문학관련 인프라 확충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지역문학관 건립 및 활성화 지원
  - 문학관련 자료 DB 구축

    유지·보수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안 등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 문학관련 연구 강화
  - 문학관련 정책자문체 구성

• 정책 협력체계 구축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위원회, 문학번역원, 지역문학관)

정책 협력체계 구축망에서 문학단체가 누락된 것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 창작역량 강화

1)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현행 문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문학작가, 도서관 파견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문인 개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지, 또한 간접지원이라 하면 문학 창작과 다른 업무에 종사케 한다는 의미인지 내용이 모호하다.*

ㅇ 청소년문학영재 발굴

- 한국문화예술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인 사이버문학광장을 거점으로,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5개 장르 청소년 문학 유망주 발굴 및 육성

⇒ *현대는 사이버가 대세인 시대이기는 하나 종이책에 대한 독서량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이버문학광장을 거점으로 한 청소년 유망주를 발굴·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혹 사이버문학광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벼운 글쓰기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굴·육성의 구체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순수문학인지, 콘텐츠산업화를 위한 것인지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ㅇ 차세대 신진작가 육성

- 신진작가를 발굴(10명 내외)하여, 창작을 위한 취재활동 지원, 온라인 창작발표 공간 지원, 작품집 발간 지원, 우수 수료생에 대한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신진작가 육성

⇒ *신진작가를 10명 정도 발굴하여 지원·육성한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 분야의 영재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신진작가를 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ㅇ 유망작가 지원

- 문단추천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도유망한 유망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계의 기초 창작역량 강화를 도모

⇒ *전도유망한 유망작가라는 명제 자체가 의미가 모호하다. 문단추천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유망작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문단의 범위 및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망작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한국문학계의 기초 창작 역량의 강화를 도모할지도 의문이다. 유망작가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ㅇ 예술원 회원 활동 지원

- (예술특별강연회) 예술원 회원들의 강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

⇒ *이는 바람직한 지원 사업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능력과 경험, 인지도를 통해 작품 외적인 육성으로 예술 세계를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예술원 회원들이 연고지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도 지역예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상호 유대강화와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할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 회원들의 연구논문 발표, 공연·전시, 작품 제작 등 예술창작활동 지원

⇒ *이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술원 회원들은 이미 사계에 명성이 있는 원로 분들이다. 그분들의 작품성이나 예술적 업적은 예술원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예술원의 권위에 걸맞게 예술창작활동 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예우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ㅇ 창작준비금제도

- 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문학인들의 안정적인 창작여건 조성 위해 창작준비금제도와의 연계 추진

⇒ *현행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제출서류를 가족들에까지 요구하고 있어 장애가 너무 많은 편이다. 이 또한 규제나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들을 불편하게까지 하면서 하는 지원이 과연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절차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2) 다양한 문학창작공간 마련

ㅇ 문학창작공간 지원체계의 구축

- (목적) 문학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주체 및 지역거점 문학관 선정
- (계획) 지역거점 문학관 선정을 통해 기타 지역문학관에 대한 1차적인 지원체계 구축

⇒ *문학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운영주체가 지역거점 문학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역거점 문학관이 없는 곳은 어찌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거점 문학관이 문학창작공간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학관에 대한 1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 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단발성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아울러 지원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산실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또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면 그 효용성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할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가 없는 지원은 계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ㅇ 국내 문학창작 공간 지원

- (목적) 작가의 문학창작, 독자와의 교류 등을 위한 지역문학관 내지 지역문학단체 소재의 문학전문공간을 지원
- (내용) 문학관 내지 문학단체와 부속 문학창작공간의 연계를 통해 생동하는 문학관으로 육성
- (특성화방안) 지역특성(광산, 어촌)이나 테마(법원, 기업, 교도소 등)별로 특성화된 창작공간을 추가 발굴

⇒ *문학창작 공간의 지원은 다소 회의적이다. 문학의 창출이 공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미 있는 공간을 개개의 주체가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새로이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지역특성이나 테마별로 특성화된 창작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착상이 뛰어나고 창작 산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ㅇ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문학인, 문학단체의 활동 지원 또는 해외 레지던스 파견

⇒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란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ㅇ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 온라인 기반의 문학 집필, 토론 등 문학 관련 커뮤니티 운영

⇒ *문학관련 커뮤니티 운영은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학인의 활동영역 확대 (「문학의 융복합」)

ㅇ 문학인과 기업의 만남

- (예술인 파견지원) 기업· 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파견하여 신규 직무개발, 활동비 지원을 통해 예술인에게 창작 부업활동 제공

- (이야기 산업) 이야기 창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야기를 활용하는 신직업 육성,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융복합 콘텐츠 발굴

⇒ *이는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할 사업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보람을 주고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아이템이다.*

ㅇ 문학인과 지역주민간 소통의 장 조성

- (「길 위의 인문학」 저자강연)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연과 관련 역사/문화/예술 등의 탐방(체험) 연계 운영

※ 우수도서와 저자강연, 현장탐방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 창출

- (문화예술 명예교사) 유명한 예술가를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위촉 및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

○ (학예사시험제도 개편) 준학예사 시험과목에 문학사 추가 및 문학관 근무경력 인정에 따른 학예사 응시기회 부여

- 준학예사 시험과목 추가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개정 추진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연계 강화) 국내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 소재 발굴 및 개발 지원 확대 및 작품별 산업화 지원 추진

⇒ *위 세 항목은 좋은 기획 사업이다. 더욱 연구하여 발전시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콘텐츠산업과의 연계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지원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학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1호, 2016.2.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문학관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폐관 신고)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보고) ①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61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